

인천지방법원 2022. 2. 23 선고 2021가단2572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상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2. 23.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2021. 5. 6. 접수 제1882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3. 체결된 증여계약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행위로서 원고 등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김병국